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of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 Focused on the City of Busan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Hyang-Sook Sung(hssung@cup.ac.kr)

요약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자치구 |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 and features of female development funds of Busan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and to make useful implications out of this so that the local female development funds can contribute to its ultimate purpose, which is to achieve female development. The analyses show that 1) local self-governmental districts with good finance try to reserve funds by reducing programs; 2) local laws, which serve as the legal ba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do not reflec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3) the programs run by the female development funds lack contents; 4) beneficiaries of the fund programs are mixed; and 5) female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re not separated, exhibiting the limitations of feministic perspectives. I propose that 1) the fund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governance of local female groups and self-governments; 2) basic local laws should be revised; 3) gender perspective contents and birth support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 keyword : | Primary Local Government | Female Development Fund |

* 본 논문은 2014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12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1월 06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18일

교신저자 : 성향숙, e-mail : hssung@cup.ac.kr

I. 서론

남녀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된 이후, 여성관련 기금이 동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부산에 설치된 총 22개 기금 중에 여성관련 기금은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기금액은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 중에서 최다액이며 2014년 현재 서울시 24,227,007천원보다 2배 많은 52,066,066천원이 조성되어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동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되었다(중앙정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각 자치구에서는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하 여성발전기금으로 칭한다). 법 개정을 통한 여성발전기금의 법적 지위는 변화되었지만,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친화적 접근이 중요한 과제[1]라는 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여성의 성평등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 여성의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권이었고[2], 개별 기초자치단체(이후 자치구로 약칭함)도 유사한 수준인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발전기금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일반 기금의 성격과 기준을 따르는데,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로 약칭함)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설치는 해당기금 관련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금 존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근거에는 기금 존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근거에는 기금의 방만한 운용, 유사·중복 기금운용, 기금설치의 합목적성에 대한 신뢰부족 등[3]이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기금운용과 관련된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고, 구체적 기준을 통해 기금운용을 비교하기 쉽지 않아[4] 기

금운용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기금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자치구 기금관리의 효율성 확보는 지자체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직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0.11월 대구시 7개 구청이 인건비 부족으로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2011년 인천시 부평구 역시 인건비 및 사업비의 매칭펀드 재원부족을 호소하였다[5]. 부산시도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바 있는데[6], 부산은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에서 본청에 설치된 기금이 총 100개 중 22개로 가장 많다. 더욱이 부산 자치구에 설치된 기금 수/자치구 수 여타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96/16개, 인천 56/8개, 대전 46/5개, 광주 37/5개, 대구 34/7개, 울산 25/4개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7]. 문제는 자치구 기금은 대체로 일반회계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건전성은 기금사업의 전체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 대상인 부산여성발전기금은 1995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정수 후보가 여성단체육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직업활동의 편익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고, 시장 당선 이후 1997~2001년까지 5년간 총 2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적립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8]. 그러나 현재의 여성발전기금은 일반 지방기금과 유사하게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타기금 간의 유사중복기금이라는 이유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1월 경남도의회는 양성평등기금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여[9] 12월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였는데, 이처럼 여성발전기금의 존치여부는 현실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기금활용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10], 여성발전기금이 명확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지역여성의 삶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 DB KISS와 DBPIA에서 10건 미만이 검색될 정도로 미미하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단위에서 여성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연구가 천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저평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 자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의 실체에 접근하고 바람직한 여성발전기금의 발전방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16개 자치구의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해당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지방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기금운용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2004년 감사원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에서 지방기금의 관리체계 미비, 기금설치 및 조성에서 유사중복성 문제, 기금집행에 따른 부당처리 및 사후관리 태만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기금의 성과분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기금제도 재정비가 시작되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지방기금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기금 설치 혹은 기금의 중복설치를 지적하는 권순현[12], 이삼주[13], 이용철[14]의 연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중복유형을 타기금과의 설치목적의 유사중복성, 타기금과 사업내용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사업과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15], 앞서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지방기금이 담당부서의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거나 구분이 모호하여 기금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권순현[16]은 자치구와 광역시 간에 기금 유사사업이 중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사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부산여성발전기금도 사회복지기금과의 중복성이 지적되면서 존재논란에 시달렸다[17]. 부산시 출산장려기금도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년간 100억 씩 총 1000억을 목표로 적립되고 있었지만, 올해

부터 중앙정부가 셋째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결정하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이 중복되어 부산시가 기금적립을 중단하였다.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기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18] 기금운용 난맥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중복기금 운용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기금은 중앙기금과 비교해볼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합리성이 부족할수록 일반회계에 대한 압박은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지자체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방기금 조성규모가 200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19]. 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기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은 기금운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복지재정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칭펀드를 담당해야 하는 자치구의 예산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중복기금 논란은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하였듯이 부산여성발전기금은 다른 여성관련 기금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통제합을 강력히 요구받기도 하였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독자적 기금으로 존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여성발전기금의 중복 혹은 유사성이라는 문제보다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여성발전기금과 성평등

지자체 및 자치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성차별 해소,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기금의 운영은 각 자치구의 입법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에는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봉화[2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여성단체가 재정적 열악함

을 메우고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역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기금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한 선도적이고 실험적 여성 아젠더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21].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첫째, 여성발전기금 규모 둘째, 여성발전기금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조례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기금의 적립 뿐 아니라 특히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발전기금 사업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범위에 따른 분석 내용은 첫째, 여성발전기금액 규모, 기금조성방법 및 조성유형, 둘째, 16개 자치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조례 유형 b. 조례내용과 특성이다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업 내용의 분석은 ① 사업내용의 성격 ②성인지적 관점의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틀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분석자료는 2010~2014년 각 년도 부산시 자치구 기금관련 계획 및 결산자료, 일반회계 예산자료를 분석하

였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요청하여 파일형태로 획득하였으며, 세부 기금사업 내용은 기금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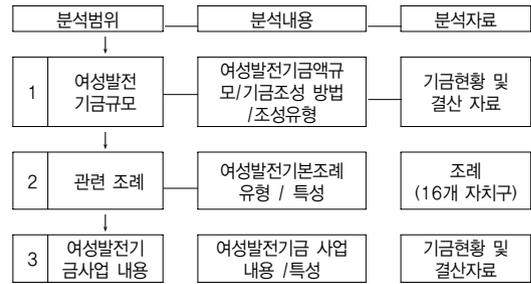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4. 분석결과

4.1 부산시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액 및 기금조성 유형

지난 2010년~ 2014년 간 부산시 16개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의 변화추이와 현재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자치구 중에서 여성발전기금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부산진구 688,216천원이며 다음으로 사상구 520,000천원, 해운대구 514,239천원, 기장군504,545천원 규모가 조성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구는 서

표 1. 여성발전기금 규모 및 수입/지출 추이

연도 구·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년 대비 증감비 (%)
	수입	지출	현재액	수입	지출	현재액	수입	지출	현재액	수입	지출	현재액	수입	지출	현재액	
금정	7,000	7,000	229,000	6,860	6,860	228,358	6,975	6,000	229,695	7,579	7,000	232,275	6,907	6,900	232,901	1.70
중구	29,000	9,000	311,000	8,000	10,000	309,000	10,000	9,000	310,000	9,682	10,560	307,573	8,730	17,000	305,758	-1.69
서구	5,553	10,080	201,150	6,000	6,000	204,535	6,400	8,000	205,441	6,090	8,000	201,110	5,464	7,000	200,838	-0.16
동구	9,000	8,000	229,000	7,000	8,000	228,000	3,000	7,000	225,000	7,514	7,000	225,051	6,989	7,000	225,040	-1.73
북구	25,000	4,000	213,000	4,000	6,000	211,000	57,000	6,000	262,000	6,220	6,000	211,804	6,600	6,800	262,337	23.16
동래	6,000	10,000	208,000	6,000	8,000	206,000	6,000	8,000	205,000	6,000	7,000	210,956	5,000	7,000	206,197	-0.87
부산진	63,191	22,013	531,000	15,501	16,963	530,000	67,286	15,447	581,157	67,406	10,365	632,480	70,000	20,000	688,216	29.61
연제	6,000	7,000	214,000	6,080	8,000	212,111	6,800	2,000	216,911	7,000	7,000	216,911	6,500	7,000	219,232	2.44
사하	6,180	6,000	215,545	6,405	8,000	216,407	6,289	9,000	211,962	6,560	6,800	212,024	6,252	6,800	211,779	-1.75
해운대	10,064	0	288,520	59,785	0	354,961	61,876	0	417,350	63,674	0	482,149	45,061	13,000	514,239	78.23
수영	17,478	5,000	223,048	22,412	5,000	242,727	27,645	5,000	264,291	29,000	5,000	288,000	27,490	5,000	310,370	39.15
영도	38,022	8,695	253,100	17,690	5,569	265,223	18,000	7,000	276,000	19,000	7,000	288,000	8,889	7,115	290,214	14.66
강서	9,000	8,000	212,000	8,000	7,000	212,555	7,000	7,000	211,555	6,800	7,000	210,510	52,721	7,000	211,326	-0.32
사상	13,000	3,000	416,000	112,000	3,000	524,000	17,000	16,000	525,000	18,000	19,000	527,000	15,000	22,000	520,000	25.00
남구	15,452	10,000	214,975	15,388	5,000	225,363	13,522	3,000	233,859	7,000	3,000	240,128	6,480	3,000	243,814	13.42
기장	107,117	7,000	340,000	109,701	7,000	443,116	67,179	10,000	500,299	16,765	13,000	504,221	13,100	15,000	504,545	48.40

출처: 각 자치구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재구성

표 2. 여성발전기금 수입구조

	2012				2013				2014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총액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총액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총액
금정	0	6,975	0	6,975	0	7,579	0	7,579	0	6,907	0	6,907
중구	0	9,319	0	9,319	0	9,682	0	9,682	0	8,730	0	8,730
서구	0	6,400	0	6,400	0	6,090	0	6,090	0	5,464	0	5,464
동구	0	7,074	0	7,074	0	7,504	0	7,504	0	6,989	0	6,989
북구	0	6,220	0	6,220	0	6,220	0	6,220	0	6,600	0	6,600
동래	0	6,000	0	6,000	0	6,000	0	6,000	0	5,440	0	5,440
부산진	0	16,254	0	16,254	50,000	19,323	0	69,323	50,000	20,000	0	70,000
연제	0	6,800	0	6,800	0	7,000	0	7,000	0	6,500	0	6,500
사하	0	6,289	0	6,289	0	6,560	0	6,560	0	6,252	0	6,252
해운대	50,000	11,876	0	61,876	50,000	13,674	0	63,674	30,000	15,061	0	45,061
수영	20,000	7,645	0	27,645	20,000	8,195	0	28,195	20,000	7,490	0	27,490
영도	10,000	8,226	0	18,226	10,000	9,351	0	19,351	0	8,889	0	8,889
강서	100,000	52,198	0	152,198	0	46,702	0	46,702	0	31,488	0	31,488
사상	0	16,880	0	16,880	0	17,482	0	17,482	-	-	-	-
남구	0	6,522	0	6,522	0	8,112	0	8,112	0	6,480	0	6,480
기장	53,000	14,179	0	67,179	0	16,765	0	16,765	0	13,100	0	13,100

출처: 각 년도 자치구 기금운용결산에서 재구성

구 200,838천원이다.

2010년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북구, 부산진, 해운대, 수영, 영도, 사상, 남구, 기장은 기금이 증가한 유형이며, 금정, 연제는 기금유지형이며, 중구, 서구, 동구, 동래, 사하, 강서는 감소유형이다.

세부적으로 기금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12~2014년 3년간 자치구 재정투입으로 기금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부산진, 해운대, 수영, 영도이며, 이것은 기금적립이 자치구로부터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 2]의 이자수입액은 [표 1]의 기금지출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집행율을 살펴보았다. 기금조성은 기금집행율과 관련이 있는데 [표 3]에서 보듯이 기금증가유형은 2010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율이 5.8%(해운대)~74.6%(사상) 수준에서 나타나며 이는 수입에 비하여 사업비 지출을 줄이는 형태로 적립액을 쌓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지유형은 수입대비 지출이 95%(금정)~97%(연제)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강서는 기금규모는 감소(-)를 보였으나 집행율은 2014년도 13.27%를 제외하면 평균 95%로서 유지유형에 가깝다. 감소유형은 수입대비 지출이 110%(중구)~138%(동래)를 상회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 3. 기금집행율(%)

	자치구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기금증가	북구	16	150	11	96	98	74.2
	부산진	35	109	23	15	29	42.2
	해운대	0	0	0	0	29	5.8
	수영	29	22	18	17	18	20.8
	사상	23	3	94	106	147	74.6
	기장	7	6	15	78	115	44.2
	남구	65	32	22	43	46	41.6
유지	영도	23	31	39	37	80	42
	강서	89	88	100	103	13	95
	금정	100	100	86	92	100	95.6
감소	연제	117	132	29	100	108	97.2
	중구	31	125	90	109	195	110
	서구	182	100	125	131	128	133.2
	동구	89	114	233	93	100	125.8
	동래	167	133	133	117	140	138.0
	사하	97	125	143	104	109	115.6

4.2 자치구 조례의 유형 및 특성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사업은 해당 자치구 조례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유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16개 자치구별 기금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는 크게 3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A유형에 여성발전기금조례는 1995년 여성발전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여성

발전기금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이후 각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영도는 성평등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이 유형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과 기금사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B유형으로, 북구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양성평등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2013년 5월에 성평등기본조례로 대체하였다. 부산진은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 목표를 10억으로 규정하고 매년 5천만원 씩 조성하고 있다. 이 유형은 전통적 조례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정책 트렌드에 반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C유형으로, 강서구는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계정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고, 서구, 사상구, 남구의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여성발전계정을 두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여성발전기금이 독립된 형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편성되어 사회복지기금처럼 운용됨으로서 기금 중복 논란은 피할 수 있지만 여성발전기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표 4. 자치구 조례 유형

	조례명	자치구
A	여성발전기본조례	금정, 중구, 동구, 동래, 연제, 사하, 해운대, 수영, 기장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영도
B	성평등기본조례	북구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진
C	사회복지기금조례(여성발전계정)	강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여성발전계정)	서구, 사상, 남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16개 구군 조례 공통적으로 성평등, 여성발전, 여성복지 증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복지(권익포함), 여성단체지원, 국제협력을 핵심 사업으로 한다[표 5]. 또한 16개 구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성친화사업 재원확보(부산진), 여성의 사회활동촉진과 복지증진(기장), 여성발전기금 운

도와 아울러 가족관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구는 다자녀가정 우대 복지사업 지원,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구청장 인정사업 중에 가족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사하구는 여성의 출산장려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기금존속기간(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8개에 이른다.

표 5. 자치구 조례상의 여성발전기금용도

구·군	기금 용도							기금존속 기한*
	권익 증진	여성 복지 사업	여성 단체 지원	국제 협력, 교류	시설 설치 운영	구청 장인 정사업	목적 외 사용 규제	
금정	○	○	○	○	○	○		2020.12.30
중구	○	○	○	○	○	○	○	2017.12.31
서구	○	○	○		○	○		규정없음
동구	○		○	○	○	○	○	규정없음
북구	○		○					규정없음
동래	○	○	○	○	○	○	○	규정없음
부산진	○		○		○			2021.12.30
연제	○	○	○		○	○	○	규정없음
사하	○	○	○	○	○	○	○	2018.12.31
해운대	○	○	○		○		○	2018.12.31
수영	○	○	○	○	○			2017.12.31
영도	○	○	○	○		○	○	2018.12.31
강서	○	○	○	○		○		2017.12.30
사상	○	○	○		○	○		규정없음
남구	○	○	○	○	○	○		규정없음
기장	○	○	○		○	○	○	규정없음

4.3 부산시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사업 내용 및 특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은 [표 6]과 같다. 사업내용을 2014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2010~2014년 기금지출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특정 연도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경우가 있을 뿐, 지난 5년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필요할 때는 2009년~2015년 사업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① 16개 자치구에서 유사하게 시행되는 여성대학, 여성역량강화 교육, 지역여성리더역량강화, 여성아카데미 등 소액(3,000천원~7,000천원)의 교육사업과 일회성 문화체험 행사가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강사비, 교통

비, 물품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내용의 한계와 더불어 단발성 교육은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또한 관행적으로 운용되는 교육사업은 언제든지 유보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례로, 해운대구에서는 2009년까지도 시행되었던 여성주간행사 등은 일시적으로 (2010년~2013년)으로 유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하여 기금지출을 0원으로 만들었다[표 1].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기금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석 내용은 타사업과의 중복성 유무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내용의 개발이나 효과성에 관한 항목은 없어 시행된 교육사업 평가가 사업내용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② 여성능력개발운영(중구), 다문화가정여성기술교육(동구), 다문화여성자격증취득과정(북구), 바리스타 양성교육(동래), 경력단절여성취창업프로그램(수영) 등,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사업이 다수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비는 1,000천원~6,000천원 규모이다. 직업능력 혹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고 장기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 계층 여성이 대상일 경우 재료비 등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단발성 교육보다 오히려 예산 규모가 작아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여가부의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사상구는 2013년 1,900천원 중 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 12,000천원이 지출되었고, 2014년 6,000천원, 2015년에는 12,500천원이 투입되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5년에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서포터즈 행사지원(1,000천원), 워크숍(4,000천원), 공모사업(1,000천원), 여성친화공간 행사지원비(4,000천원), 도서구입비(1,000천원), 실무활동지원비(1,000천원)가 지출되었다.

둘째, 사업내용의 성인지성 측면을 살펴보면 ① 앞서 서술하였던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등 관행적 사업추진의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제안이나 아젠더가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여성단체지원과 관련하여, 금정구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북구 여성단체사업지원, 동래 여성단체자원봉사자 워크숍, 부산진·해운대·영도의 여성단체 지원사업 등이 있다. 부산진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공모사업으로 4~5개 단체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 당시에 여성단체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여전히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이라는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일회성·봉사자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는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렵다. 현재 부산지역의 여성단체가 노쇠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여성인력과 기금 등의 재원 투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서구, 사하, 영도구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출산축하선물은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3째 아동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51명에게 지급되었다. 사하구의 출산장려 사업내용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 1,000천원이 지출되었다. 영도의 저출산극복 추진사업은 4째 자녀 이후부터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명, 2015년 현재 6명이 지급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출산지원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인데 자치구 조례규정에 의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출산지원이 과연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격평명이 필요하다.

④ 강서, 남구의 경로잔치, 이웃돕기, 홀로어르신격려 사업은 여성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것이지만 사업비는 여성발전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이들 자치구는 사회복지기금조례 혹은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를 두고 여성발전계정의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이다[표 4]. 이러한 사례는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사회복지기금사업의 대상자 경계가 불명확하여 유사중복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표 6.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사업 내용

	기금사업 내용(단위:천원, 명)
금정	◦금정여성어울림한미당(2,000)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2,000) ◦ 다문화여성한마음대회 행사참가(2,900)
중구	◦여성능력개발운영(6,000) ◦여성대학(7,00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2,000) ◦다문화가족 대회(2,000)
서구	◦출산축하선물구입, 다문화가족 및 출산장려행사지원-21회/6915천원
동구	◦동구여성대학(2,000/100명) ◦다문화가정등여성기술교육(1,000/50명) ◦다문화가족한글교육(4,000원/30명)
북구	◦ 여성단체사업지원 (3,500)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요리교실(1,000) ◦다문화여성자격증취득과정 (2,000) ◦여성역량강화교육 1,000
동래	◦ 결혼이민(다문화)가정비스타 양성교육 (1,000/10명) ◦여성주간 기념 동래구여성대회 지원 (3,000/520명)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마을체육 대회(1,000/120명) ◦동래구여성단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워크숍 (2,000/120명)
부산진	◦ 여성주간기념행사(1,000천원) ◦ 여성권익교육(2,000천원) ◦여성단체지원(10,000천원)
연제	◦연제여성단체행사지원(5,000) ◦이주 여성교육문화지원(2,000)
사하	◦다문화감사양성 파견지도 및 멘토링(4,000) ◦기타출산장려(1,000) ◦지역여성리더역량강화(1,800)
해운대	◦2009-여성주간행사(5,730) ◦여성단체지원(2,000) ◦2014-여성영양문화 및 양성평등지원(9,000) ◦여성단체운영지원(4,000)
수영	◦경력단절여성 취창업프로그램(5,000)
영도	◦여성지역문화탐방체험(2,000) ◦여성지도자양성교육(1,000) ◦저출산극복 추진(3,000) ◦여성단체활동지원(2,000)
강서	◦경로잔치(3,000) ◦이웃돕기(2,000) ◦여성아카데미개최(2,000)
사상	◦모자가정고교입학준비금(800) ◦여성친화도시(400) ◦여성영양문화지원(600)
남구	◦홀로어르신격려(1,000) ◦한부모가족아동밀반찬지원(1,000) ◦결혼이주여성멘토결연사업(1,000)
기장	◦여성지도자 연수(2,000) ◦다문화가족 지원(3,000) ◦새터민자녀 지원(2,000) ◦사할민한인 지원 사업(2,00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6,000)

출처 : 2010 기금운용성과분석: 해운대
2014기금운용성과분석: 서구, 동구, 해운대, 수영, 남구, 기장
2014기금운용계획결산: 영도, 강서, 사상
2014기금운용계획: 북구, 연제, 사하
2015기금운용성과분석: 동래, 부산진

4.4 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여성발전기금규모와 조성유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① 2014년 말 현재 기준으로 기금운용을 위한 최소 5억이 넘는 자치구는 부산진, 해운대, 사상, 기장으로, 증가유형에 속하는 자치구이다. 기금수입구조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차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구 조례에는 이미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이자)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규모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이차수입이 줄어서 적절한 규모의 기금으로 키

우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진의 경우에는 10억을 목표로 2013년부터 기금적립을 하거나 혹은 기금증가 유형 자치구는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집행율을 저하시키거나 유보하는 방식으로 기금규모 증대를 지속하고 있다.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집행율의 저하는 기금준치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논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②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표 2]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표 6]은 자치구 기금조성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된다. 동종 자치구 전국평균이 2014년 기준 21.4(군의 경우, 22.2)인데 강서, 해운대, 기장을 제외하면 여타 자치구는 전국평균과 유사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2].

현재 부산시 자치구는 복지비 비중이 60% 수준으로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비 부담이 훨씬 높아 지역발전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행사 축소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조정교부율 2.2%p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상안이 실행된다면 자치구 교부액이 585억 증대되며 각 자치구별로 세입이 3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그러나 향후 자치구 재정여건이 확충된다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지역여성의 적극적 기금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금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표 7. 부산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추이

단체명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순계)	57.6	56.4	57.4	56.6	51.4
시분청	54.1	52.1	52.9	51.8	47.5
군·구평균	22.3	25.1	27.1	27.3	22.2
기장군	40.4	32.4	35	37.4	31.5
자치구평균	20.6	24.5	26.3	26.3	21.4
중구	27.7	29.4	31.2	30	23.6
서구	11.4	14.7	14.8	13.6	10.4
동구	15.8	18	19.7	19.8	15.3
영도구	13.8	14	13.6	14.4	10.9
부산진구	23.1	28.6	29.8	30.8	23.9
동래구	24.1	26.7	27.5	25.9	20.3

남구	18.2	23.6	25.5	26.9	22.1
북구	13.2	15.6	17.2	15.9	13.6
해운대구	25	30.4	33.2	34.1	28.9
사하구	18.8	22.8	23.8	22	19.9
금정구	19.1	23.1	28	26.6	22
강서구	38.6	44.3	44.7	47.8	46.9
연제구	21.7	23.7	25.8	32.3	19.5
수영구	20	26.4	31.4	26.1	19.7
사상구	22.3	25.9	26.5	25.8	21.3

출처 : 2015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둘째, 자치구 조례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면, ①북구 성평등 조례와 부산진구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면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것을 부산의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에 기반한 양성 간 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조례는 강남, 강서,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용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경남도 성평등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의회 해당상임위는 금리, 재정운영 효율성을 따져 양성평등기금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였는데[24],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조례의 제정보다 조례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 내용 및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면 ①여성교육, 직업훈련, 여성단체 지원사업 등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내실 있는 콘텐츠와 기획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소액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여성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방식이었으나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실험적 아젠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몇몇 자치구에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가부사업인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여성발전

기금사업은 이러한 Top Down방식이 아닌 자치구 특성과 지역여성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여성발전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여성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는 지역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부산시와 자치구의 정책수행 파트너이다. 현재 16개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총 223개, 회원 2만여명으로 평균 1개 자치구 당 14개 단체, 1,2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25]. 그러나 젊은 여성층 회원의 신규가입이 적어 단체의 활력이 떨어져 노쇠화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을 전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운동 주체로서의 여성단체가 Bottom Up방식의 아젠다 개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② 서구, 영도, 사상 3개 자치구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산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서구와 영도는 16개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0.878, 0.871로 가장 낮고 재정자립도도 10.4, 10.9로 가장 낮다[26].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3개 자치구에서 지출되는 출산지원은 출산 관련된 일반회계 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독자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각자 경계가 불분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구는 2014년 기금으로 3째아 이후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상품권이 제공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출산축하금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93,000천원, 건강보장보험료 9,404천원 지출되고 있다. 영도에서도 출산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4째 자녀 이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총 50만원의 사회보장수혜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하는 캠페인을 통한 출산인식개선사업이 수행되었다. 출산지원처럼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여성발전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③ 여성발전과 가족지원 특히 출산과 관련한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함에 있어, 과연 출산을 여성발전을 위한 과제로 여성계가 수용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27]. 또한 양성평등이 여전히 여성정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출산지원에 지출되는 것은 여성정책이 출산증진을 위한 도구로 전략되었다는 비판[28]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 용도에 가족지원을 포괄하고 있고, 출산이 국가적 과제로서 미래한국사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지만, 결국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출산지원과 여성정책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여성발전기금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기금사업 대상자에 여성이 아닌 저소득층, 노인, 새터민 등 사회복지 대상자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면 여성발전기금이 존폐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명확한 대상과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첫째, 부산시 자치구에 설치된 부산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금규모가 적고, 기금사업의 유보 혹은 비활성화를 통한 적립방식을 취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금폐지 논란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부산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조례는 최근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무엇보다 실질적 내용의 담보가 중요하다. 셋째, 자치구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성인지적 콘텐츠와 사업기획력 부족,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수혜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출산지원 가족정책의 미분리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성인지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여성발전기금이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 여성계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자치구 여성단체, 여성정치인, 여성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여성계와 부산시·부산시의회·자치구·자치구 의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과정은 자치구 여성발전기금 관련 조례의 실질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부산에서 이슈가 된 건강불평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에 걸친 부산의 건강불평등 조사에서 7대 도시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29], 이와 관련하여 민간차원에서 여성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된다면 여성사업의 기획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여성발전과 출산 지원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수행과정에 유발될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여성발전기금은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지속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여성계의 여성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여성계가 자치구·구의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연구내용을 보편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초적 실증연구가 미흡하여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첫째, 부산의 현안인 출산지원정책의 성인지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발전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지역여성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증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15.

[2] 주재선,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012.

[3] 감사원,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실태*, 2004.

[4] 김종세, “지방자치단체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법학 연구, 제42집, pp.25-43, 2011.

[5] 윤영진, 김경도,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31집, 제1호, pp.229-250, 2012.

[6] 서울신문, 2015. 8.6.일자

[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5

[8] 주경미, *여성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 연합뉴스, 2015.11.26.일자.

[10] 서순옥 김종옥 김도관,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분석 및 청년고용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1.

[11] 성향숙, “부산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pp.7-40, 2014.

[12] 권순현, “지방기금운용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pp.93-132, 2008.

[13] 이삼주,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4호, pp.87-104, 2009.

[14] 이용철, “지방예산 및 기금운용방향,” 지방재정, 제2013권, 제2호, pp.26-51, 2013.

[15]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14.

[16] 권순현, “지방기금운용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pp.93-132, 2008.

[17] 부산일보, 2009.11.05.

[18] 부산일보, 2014.12.02

[19] 허명순, *지방기금관리실태분석*, 감사연구원, 2012.

[20] 이봉화, 김경아, “여성발전기금의 평가도구 개발 및 지원단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3호, pp.128-141, 2006.

[21] E. Brilleant, “Women’s gain: Fund raising and Fund Allocation as an Evolving Social Movement Strategy,”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29, Issue 4, pp.554-570, 2000.

[22]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2015.

[23] 이종필, “부산시 재정현실 및 발전과제,” 부산시 재정개혁시민대토론회 자료집, 2015.

[24] 경남여성단체연합, 2015.11.25일자 성명서

[25] 부산시 16개 자치구 홈페이지.

[26]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27] 행복한강원도 위원회, *2014년 여성정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자료집*, 2013. 9. 26 ;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평가*, 2012.

[28] 김영옥, “지출산사회의 여성정책,”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0 권, 제13호, pp.1-14, 2010.

[29] 부산일보, 2013.7.9, 9.13, 9.24, 10.1, 10.15일자.

저 자 소 개

성 향 숙(Hyang-Sook Sung)

정희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여성복지, 다문화, 결혼이민여성